

---

#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 관련 체크포인트

2016. 7. 13

---

이환성 연구위원 (hwanslee@naver.com)

## 요 약

1. 국가결산보고서 관련 제도 / 1
2. 국가결산보고서 개관 및 결산심의 절차/ 5
3. 결산심의 체크포인트 / 7
4. 고려사항 / 16

보고서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요 약 》

- 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5.31(화) 국회에 제출
- 이번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9.1)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
-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결산심의 체크포인트
  - (핵심 의미) 각 부처나 예산당국이 ‘先계획 後예산지원’의 기본원칙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가
  - (편성 목적) 2015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가, 특히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조기집행을 수행했는가
  - (기관 지적) 국회(위원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조사처),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에서 지적인 문제사업들 위주로 우선 추적
  - (집행실적 부진) 연례적인 부진 사례를 수집하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최근 2~3년 전에 편성한 사업 등 사업추진기간이 짧은 사업들의 집행실적 부진에 대한 사례를 더욱 주의해서 파악
  - (사업성과 부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업성과(즉, 사업목적이나 목표 등에 따른)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부족한 사업 파악
  - (대규모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사업, 다부처사업 등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
  - (새누리당 정강) 당헌 제2조(목적)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이념과 가까운 예산사업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 1. 국가결산보고서 관련 제도

## □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국가회계법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2013.7.16>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2. 국가결산보고서 개관 및 결산심의 절차

○ 정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5.31(화) 국회에 제출<sup>1)</sup>

- 기획재정부, 4.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등을 4.8일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 4.10일부터 5.20일까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5.20일 기획재정부에 송부

○ 감사원 검사결과를 반영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수정사항<sup>2)</sup>

- 총세입(328.1조원)과 총세출(319.4조원), 국가채무(556.5조원)에는 변동 없음
-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284.8조원에서 0.4조원(※) 증가한 1,285.2조원임
  - ※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어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 등
  - ※ 재무제표상 자산은 300억원 수준 증가
- 국가채권 현재액은 당초 267.9조원에서 0.1조원(※) 감소한 267.8조원 수준임
  - ※ 유가증권 인수분에 대한 대여금과의 상계처리 누락 등
- 국유재산 현재액은 당초 990.3조원에서 0.1조원(※) 감소한 990.2조원 수준임

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보도자료, 2016.5.31.

2) 상계서.

※ 장부가액 미수정 및 가격 재평가 미실시 등

※ 물품은 194억원 수준 증가

### <표> 감사원 결산검사 후 국가결산 주요 수정 사항

(단위 : 조원)

구 분	2014년	2015년		
		당초(A)	수정(B)	증감(A-B)
▪ 재무제표 부채	1,212.7	1,284.8	1,285.2	0.4
▪ 국가채권	237.6	267.9	267.8	△0.1
▪ 국유재산	938.5	990.3	990.2	△0.1

○ 이번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9.1)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경우 결산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행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의 경우 예비심사를 거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 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찬반토론(표결)으로 이루어짐
- 본회의 심의·의결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함
-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하고, 정부·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결과보고

### 3. 결산심의 체크포인트

○ 체크포인트는 각 부처나 예산당국이 '先계획 後예산지원'의 기본원칙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임

① 2015년도 예산편성의 목적<sup>3)</sup>에 맞게 집행했는가를 파악

- 2015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목적은 확장적인 재정운용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 중점 추진과제 : ㉠소비·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안전사회 구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등
- 국토교통부 일반철도건설 프로그램內 세부사업 중 추경대상사업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이고, 추경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은 총 6,422억원,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5,907억원 전액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출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중 2조 7,246억원을 실집행하였음<sup>4)</sup>
- 일반철도 건설 추경대상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당초 본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취지가 달성되지 못함

3) 기획재정부, "2015년 나라살림 개요 발간", 보도자료, 2015.1.29.

4) 국회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63-65쪽, 2016.7.

②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조기집행<sup>5)</sup>했는가를 파악

-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설비투자펀드 등 46조원 정책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수준) 중 올해 집행 가능한 10조원을 최대한 조기집행

③ 2015년 편성한 예산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위원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조사처),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에서 지적한 문제사업들 위주로 우선 추적하고 파악해야 함

-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으로 지적된 사업을 우선 파악
  - 각 부처 사업 중에서 일정 부분(1/3 ~1/5)에 대해 11개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별로 5단계 점수를 매기고, 일정 등급 이하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이라는 원칙을 적용
-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문제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심층평가 결과를 주시

④ 예결산에 대해 분석, 검토, 심사, 심의를 수행하는 실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이용, 전용, 이월, 불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임

⑤ 2015년에 새로 편성한 신규사업, 최근 2~3년 전에 편성한 사업 등 사업추진기간이 짧은 사업들의 집행실적 부진은 줄속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서 파악

5) 기획재정부, "2015.3.9.(월), 연합뉴스 「정부, 경기위해…」", 보도해명자료, 2015.3.9.

- 설계완료시기가 연내 도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례<sup>6)</sup>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사업은 외삼동과 유성복합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로, 세종시와 대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급행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2015년 예산현액 14억 2,100만원 중 8억 3,9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8,100만원이 이월됨
- 「행복도시-공주시 연결도로(2구간)」사업은 당진-대전 고속도로 공주나들목에서 공주시 송선교차로까지 3.12km의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임. 2015년 예산현액 15억 8,700만원 중 6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8,900만원이 이월됨

⑥ 집행실적 부진의 사유는 대부분 사업 준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파악해야 함

- 주요 사유는 관련 법률 미비, 관련 시행령 미비, 기본계획 등의 관련 지침 미비, 사업추진 절차나 주체에 대한 불확실성, 사업착수 준비에 필수적인 토지보상이나 기계장비 구입의 비수월성, 관련 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과다 예상 등
-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지역간선국도 건설사업 중 총 49개 세부사업에 계상된 토지매입비 예산을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음<sup>7)</sup>
- 49개 사업의 2015년 추경예산액은 5,481억원이며,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현액 7,845억원 중 7,738억원을 한국감정원에 교부하였음

6) 국회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146~147쪽, 2016.7.

7) 국회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80~81쪽, 2016.7.

-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매입비 집행률이 99.9%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액이 한국감정원 단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음
- 2015년 한국감정원으로 교부된 7,738억원과 전년도에 교부받았으나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 1,307억원을 합한 토지매입비 예산현액 9,045억원 중 5,294억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은 58.5%로 나타나 매우 저조

⑦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업성과(즉, 사업목적이나 목표 등에 따른)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부족한 사업을 파악**

- 국가장학금사업은 소득별 맞춤형지원(i유형),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또는 장학금 유지·확충) 연계 지원(ii유형), 다자녀(셋째 이상 자녀) 국가 장학금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sup>8)</sup>
- 2015년에는 예산액 3조 6,000억원 중 i유형으로 2조 7,232억원, ii유형으로 7,007억원, 다자녀 국가장학금사업으로 1,509억원을 집행하여 116만 2,674명에게 총 3조 5,748억원을 지원함(실집행률 99.3%)
- 개선과제로는 소득분위의 기준 마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정책의 차별화, 지속가능한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집행 효율성 제고, 효과성 및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등임

⑧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했는가를 파악

- ㉠예산이 아니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는가? ㉡국가예산만이 아니고 지방예산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 했는가? ㉣현물, 현금, 채권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적절히 활용했는가?

8) 국회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II」, 271~292쪽, 2016.7.

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 파악

- (대상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면제사업)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등
- 대규모사업 추진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수용 및 보상, 착공, 감리 등의 절차를 거침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에서 위탁관리하며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권고하는 작업임
- ※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함

⑩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의 주요 사업비나 사업기간이 자주 변경되었는가를 파악

- (대상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 (면제사업) 국고로 용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건설공사의 경우 공종단계별로 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을 점검하고, 특히 공공청사 건축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되지만,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는 포함됨을 주의

⑪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파악

- (대상사업)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교통시설, 환경시설, 교육시설 등 15개 분야 50개시설이 해당됨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제안자가 독창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무관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추진하는 방식이고,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추진하는 방식임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주로 수익형민자사업 방식과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임

-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임
- 수익형민자사업 추진절차는 해당사업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 민자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자를 모집·평가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함

⑫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사업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파악

- (대상사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
- (면제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 하는 사업 등
- 공공기관사업 평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에서 위탁관리하며 공공성 평가(경제성평가와 정책적 타당성평가), 수익성 평가(개별사업 재무성 및 기관자체의 재무안정성)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추진 여부를 권고하는 작업임
- 항공우주박물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에 111,772㎡ 규모로 조성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50억원이 투입되어 건립<sup>9)</sup>

- 수익성 검토는 사업계약이나 제안서 작성 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가 2배로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수년전에 도입된 현재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다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임

### ⑬ 일반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다부처사업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파악

- 2016년 기준으로 일경험 사업은 11개 부처에서 2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예산액은 5,832억 7,400만원<sup>10)</sup>
- 첫째, 이공계대 인턴십운영 등 8개 사업이 목적이 불분명하여 진로탐색만 제공되는지, 취업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모호하여 문제
- 둘째, 일경험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사전예방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후 감독·적발·구제에 치중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

### ⑭ 부처의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파악

- 연기금사업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 등의 수급체계가 중요하고, 보조금, 기초급여 등의 경우 특히 보건복지부 사업은 부정수급의 문제나 전달 체계의 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임
- 보건, 안전 등에 관한 사업의 경우 사전예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

9) 국회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145~155쪽, 2016.7.

10) 국회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Ⅱ」, 3~28쪽, 2016.7.

하고, 기초연구개발·기술연구개발·상용화기술개발 등은 실집행을 제고, 성과관리 제고, 기술개발과 사후관리 체계의 합리화가 중요

-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계획성 제고, 설계변경 과다 방지 등이 중요하고, 금융사업의 경우 중복수혜, 수혜자 편중, 할인율 차등 등이 중요

⑮ 새누리당의 정강에 맞는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 (새누리당 당헌 제2조: 목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인류공영의 정신과 빛나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함

## 4. 고려사항

### ○ 20대 국회 2015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의 시작(7.11)

- 각 상임위는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 심의를 마친 후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 예결위는 상임위 심의 결과를 재검토한 후 7.21일 결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상임위 결산 심의와 별도로 7.15일까지 공청회, 정부를 향한 종합정책질의 등을 진행할 계획

### ○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 결산 심의는 신속히 의결

- (결산 의미) 결산이란 민간에서는 숫자를 맞추는데 큰 의미를 두지만, 공공에서는 문제점을 찾아 예산심의에 활용하는데 있음
- (향후 과제) 결산심의를 통해 관련 법제나 조직을 개선하고, 정기국회에 2017년 예산안이 들어오면 예산삭감 및 예산증액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